

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2. 9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사유

- 지방세법 제238조 및 구미시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계획세 과세대상

-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적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중 지방세법 제2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5조에 정한 토지 및 건축물.

나.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대상(28.979㎢)

- 읍 지역 : 17개리 25.274㎢
 - 선산읍 : 1개리 0.527㎢(죽장리 일부지역)
 - 고아읍 : 16개리 24.747㎢
 - 구미도시계획권 : 21.291㎢(원호1,2, 문성1,2,3, 다식, 괴평1,2, 송림, 봉한1,2리 일부지역)
 - 고아도시계획권 : 3.456㎢(관심1,2, 이례, 오로, 파산리 일부지역)
- 면 지역 : 4개리 3.705㎢(신당1,2 봉산1,2리 일부지역)

다.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 지번별조서 : 붙임

3. 참고사항

가. 지방세법 제235조, 제238조(부과징수 및 부과지역고시)

- ① 도시계획세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시·군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
- ②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·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·군수가 이를 고시 하여야 한다.

나. 구미시세조례 제84조(부과지역의 고시)

- ①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 하여야 한다.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

4. 부과징수 방법

가. 과세기준일 및 납기

- 토 지 : 매년 6월 1일기준 10월16일 ~ 10월31일납기
- 건 축 물 : 매년 6월 1일기준 6월16일 ~ 6월30일납기

나. 세 율 : 재산세, 종합토지세 과세시가표준액의
1000분의2

다. 납세고지 :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
하여 고지

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

(단위 : ㎢)

구 분	지 역 명	면 적	비 고
총 계	2읍 1면(21개리)	28.979	
선 산 읍	죽장리 일부지역(1개리)	0.527	
고 아 읍	관심1.2, 이례, 오로, 파산리 일부지역(5개리)	3.456	
	원호1.2, 문성1.2.3, 다식, 괴평1.2, 송림, 봉한1.2 일부지역(11개리)	21.291	
산 동 면	신당1.2, 봉산1.2리 일부 지역(4개리)	3.705	